치매환자 인권 보호 든든한 보호막

전주시, 치매환자 존엄성 보장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 시행

전주시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연계하고, 후견심판 청구 절차 지원, 후견활동 관리 등 공공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 지원하며, 이들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방임·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선정된 치매환자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후견인이 지정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거소 관련 사무 △일상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사무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치매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사무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의 안전망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공공후견인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가 없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주관 법정 의무교육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중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추천된다. 이후 가정법원의 특정후견 심판청구 요청·판결이 되면 공공후견인 자격을 취득한다.

이에 앞서 시는 올해 현재 법원의 심판청구 인용 결정으로 공공후견인 1명이 치매노인의 안부 확인과 병원 진료 동행, 복지급여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치매공공후견 사업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공공후견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치매어르신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공공후견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후견이 필요한 치매 노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과(063-281-6227)로 연락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이 시장 재판과정 '이재명 판례' 꺼내
재판부 '검증절차 없어' 미필적 고의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5일 1심 재판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후 재판정을 나온 이 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깨지지 않을거 같았던 이재명 판례도 먹히지 않았다. 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얘기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당선이 무효된다.

이밖에도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이 각각 선고됐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이 시장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최고무기로 불리는 일명 '이재명 판례'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판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무죄'를 선고받았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3328)이다.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담고 있다.

최근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 또는 '무죄' 선고를 받은 최경식 남원시장과 우범기 전주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정헌율 익산시장 등은 이러한 '이재명 판례'를 근거로 살아남았다.

이 시장 측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당시 제보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고, 설령 토론회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판례를 의식한 발언이었다.

보도자료와 카드뉴스 배포에 대해서도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재명 판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 시장이 의혹을 제기하기 전 충분한 확인절차를 밟지 않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이재명 판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절차'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절차 후의 발언은 결과론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판례에 의해 '무죄'가 될 수 있지만, 확인작업 없는 의혹제기는 허위사실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미필적 고의'가 적용된다. 반대로 검증절차 후 허위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의 발언은 '확정적 고의'로 인해 역시 이재명 판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자의 부동산은 투기 목적으로 매입 한 것이 아닌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던 점, 의혹을 제기하기 전 충분한 검증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른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피고인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은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들이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상당해 후보자에 대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확인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의혹을 제기해야 함에도 사실확인 없이 만연히 제보자의 제보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선거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에 의혹을 라디오와 방송 토론회에서 제기했고, 이에 대해 상대 후보가 반박했음에도 추가적인 객관적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선거일이 매우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의혹을 받은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배포해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전주시의사회 · 이웃사랑의사회, 의약품 후원

돌봄 노인 600여명에 전달

전주시와 사단법인 이웃사랑의사회, 전주시의사회는 5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실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후원하는 내용의 전달식을 가졌다.

전주시와 사단법인 이웃사랑의사회, 전주시의사회는 5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실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후원하는 내용의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후원된 의약품은 전주시 통합돌봄 대상자 6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사)이웃사랑의사회는 전주시의사회 소속 사회봉사단체로, 지난해에도 통합돌봄 노인 86명을 위한 300만 원 상당의 이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후원과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전주시의사회에서도 지난 2019년부터 통합돌봄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주시 통합돌봄 건강의료안전망 사업에 참여해 △건강주치의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김옥기 기자

정부, 고 박해옥 할머니 공탁 신청 법원에 재접수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1930~2022)에 대한 공탁 신청을 법원에 재접수했다.

전주지법은 5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인 박해옥 할머니 상속인에 대한 공탁 신청이 재접수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공탁신청서류에 피공탁자를 박 할머니의 자녀 2명으로 기재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불수리 결정(받지 않음)했다. 소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정부가 제출하지 않아서다.

정부가 법원에 청구한 피공탁자는 박 할머니로 되어있었다.

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으로 변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난 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정권고했지만 서류보완이 되지 않아 불수리 결정했다.

이에 외교부는 "(전주지법 결정은)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면서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해명한바 있다.

/뉴시스

덕진구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 '행복반찬' 나눔

소외가정 등 155세대에 밑반찬 전달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5일 '덕진구 사랑의울타리봉사단' 주관으로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반찬'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덕진구 사랑의울타리봉사단은 지난 5월달에 이어 외부활동이 적은 소외계층과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부모님과 가족이 드신다는 생각으로 돼지불고기, 오이미역냉국, 무생채, 참외 등을 정성껏 만들어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업지원금과 자원봉사를 해주신 회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많은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정성이 가득한 반찬을 지원해 더욱 뜻깊은 나눔 행사가 됐다.

이성희 회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단 하루라도 건강하고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수 있으면 좋겠다"며 "더불어 행복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항상 곁에서 내 부모처럼 어르신들을 살피는 봉사자들 덕분에 밑반찬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것 같아 기쁘다"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보살핌으로 항상 웃을 수 있도록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